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(이촌1동 302-75) [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김선우 [6576] 대리 고영옥 [6573]/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6019호

시행일자 2017. 9. 19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65호(2017. 9. 19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3조·제24조 및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4조·제25조·제64조 따른 「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70호, 2016.12.30.)」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요내용]

○ 현재 임신.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임신 중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출산(유산)자까지 포함 하도록 내용 변경
○ 시행일: 발령일

붙임: 개정 고시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